

『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태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,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과 사업의 위탁수행을 위한 근거 신설(안 제47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
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각종 활성화 사업의 시행과 추진 시 관련 단체·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- 관내 전통시장은 '22년 12월 기준 선산봉황시장, 해평공설시장,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등 16개소임.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사업의 추진 시 관련 단체·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